

축산법 시행령

▶ 시행 2014.2.23

[대통령령 제25192호, 2014.2.21, 일부개정]

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 대통령령 제25192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의 범위를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규모 소·돼지·닭·오리 사육업으로 확대하되,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사육시설의 면적별로 2016년 2월 23일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확대된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중 한우·육우의 경우 500제곱미터 이하, 젓소의 경우 640제곱미터 이하, 돼지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하, 산란계의 경우 1천300제곱미터 이하, 육계의 경우 1천400제곱미터 이하, 오리의 경우 1천230제곱미터 이하인 중소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제14조제1항 중 “축산업 허가”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4)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닭(산란계, 육계)오리 사육업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면적	산란계: 1천300제곱미터 초과 육계: 1천400제곱미터 초과 오리: 1천230제곱미터 초과	산란계: 1천300제곱미터 이하 육계: 1천400제곱미터 이하 오리: 1천230제곱미터 이하
사육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집란실 (산란계 사육업만 해당함)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2) 방충, 방서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 (3)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에어컨 등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1) 집란실을 설치할 것 (2)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소 독 시 설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 옷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가축 사육시설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생석회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 옷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를 갖추어 두거나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가축 사육시설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구분	시설 및 장비	
방역 시설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나목2)가)의 표의 시설 형태란 중 “초임우(12개월령 이상 24개월령 미만)”를 “미경산우(12개월령 이상)”로 하고, 같은 가)의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미경산우: 분만 경험이 없는 12개월령 이상의 암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4년 2월 23일 당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014년 2월 23일에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2월 22일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5년 2월 23일 당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015년 2월 23일에 제13조제2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6년 2월 22일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6년 2월 23일 당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는 2016년 2월 23일에 제13조제3호의 개정규정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2월 22일까지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 당시 가축사육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는 해당 가축사육업의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 이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